

## 학회 회칙

### | 학회 회칙 |

1961년 11월 11일 서울대 부속병원 A강당에서 개최된 창립 총회에서 감염과 관련된 학자 70여명이 모여 감염과 관련되는 학문의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칙을 토의한 후 통과시켰다. 당시의 회칙은 총칙, 회원, 조직, 임원, 총회 및 평의원회와 재정의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6회에 걸쳐 부분 개정이 있었고 1987년에는 제 7장의 부칙이 추가되었다. 1961년 이후 회칙의 주요 변화 내용을 보면 1973년에 재정을 입회금, 연회비, 중신회비 및 찬조금으로 구분하였고, 1976년에는 평의원회의에서 감사 1명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총회와 평의원회의의 안건 의결 방법을 명문화하였고, 입회금과 연회비 및 중신회비 액수를 구체화하였다. 1987년에는 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회원 중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을 추가하였으며 준회원은 삭제하였고, 평의원 수를 20명 내외로 제한하고 감사 2명을 임명하였다. 1992년에는 간행부와 연수교육부를 신설하고, 1996년에는 기획부를 신설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재무부를 신설하였다. 1961년 당시의 회칙과 1996년 개정된 현재의 회칙은 다음과 같다.

#### 大韓感染學會 會則 · 제정 : 1961년 11월

#### 第 1 章 總 則

- 第 1 條 本會는 大韓感染學會라 부른다.
- 第 2 條 本會의 目的은 感染에 관련되는 學文의 向上과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도모하는 데 있다.
- 第 3 條 本會의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 第 4 條 本會는 地方에 支部를 둘 수 있다.

#### 第 2 章 會 員

- 第 5 條 本會 會員은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나눈다. 正會員은 感染에 關한 研究 治療 또는 豫防에 중사하는 醫師로 하고 準會員은 醫師가 아닌 者로서 이 部門에 중사하거나 本會의 趣旨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構成한다. 그러나 准회원은 選舉權 및 被選舉權이 없다.
- 第 6 條 本會에 入會하고자 하는 사람은 本會에서 정한 入會願書 및 入會金과 初년도 會費를 添附하여 申請한다.

#### 第 3 章 組 織

- 第 7 條 本會의 目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總務部, 學術部
- 第 8 條 各部의 分擔業務는 다음과 같다.  
一. 總務部: 庶務, 會計, 企劃, 支部設置, 連絡 및 他部에 속하지 않는 業務  
一. 學術部: 學會, 集談會, 座談會의 開催와 會報 또는 機關誌의 發行

#### 第 4 章 任 員

- 第 9 條 本會의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둔다.  
會長 1名, 副會長 1名, 評議員 若干名 部長 各 1名  
本會에 名譽會長 및 名譽會員을 둘 수 있다.
- 第 10 條 評議員은 總會에서 選舉하고 會長 및 副會長은 評議員會에서 選舉한다.
- 第 11 條 會長은 本會를 統率하고 밖으로는 本會를 代表하며, 總會 및 評議員會를 召集하고 그 會의 議長이 된다.  
評議員은 議長을 돕고 議長 有故時에는 會長을 代理한다.
- 第 12 條 會長은 評議員中에서 各部의 部長을 1名씩 任命한다.
- 第 13 條 評議員은 評議員會를 構成하며 本會運營에 參與하고 議決한다.
- 第 14 條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重任할 수 있다.

#### 第 5 章 總會 및 評議員會

- 第 15 條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定期總會는 年 1回 이를 召集하고 本會에 關한 一切의 事項을 檢討하고 豫算을 通過시키며 會員의 研究業績을 發表케 한다. 臨時總會는 平議員會의 決議로 會長이 召集한다.
- 第 16 條 平議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評議員의 三分之一 以上이 要求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第 6 章 財 政

- 第 17 條 本會의 財政은 入會金, 年會費 또는 贊助金으로 이를 充當한다.

- 第 18 條 본회의 收支決算은 平議員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 總會에 上程하여 通過되어 야 하며 會報 惑은 機關誌上에 이것을 報告한다.
- 第 19 條 本會則은 總會의 決議로서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總會 및 平議員會의 모든 決議는 在席人員의 過半數 贊同으로 成立된다.
- 第 20 條 本會則에 規定되지 않은 모든 事項은 一般 規則에 準한다.
- 第 21 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有效한다.

제1차 개정 : 1987년 1월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본회는 대한감염학회라 부른다.
- 제 2 조 : 본회의 목적은 감염에 관련되는 학문의 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 제 3 조 :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 : 본회는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등의 개최 및 후원
  - 2) 학회지 및 기타 학회목적에 합당한 도서의 발간
  - 3) 연수교육에 관한 사업
  -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 회 원 : 감염학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한 사람으로 감염학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
  -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개인
- 제 6 조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에서 정한 입회원서 및 입회금과 첫년도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 3 장 조 직

- 제 7 조 :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총무부, 학술부
- 제 8 조 : 각부의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부 : 서무, 회계, 기획, 지부설치, 연락 및 학술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무
  - 2) 학술부 : 학회, 집담회, 좌담회의 개최와 기관지, 회보 또는 도서의 발행

제 4 장 임 원

- 제 9 조 :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평의원 20명 내외, 부장 각 1명, 감사 2명
- 제 10 조 : 회장 및 부회장은 전임기의 평의원회에서 임기 만료전에 선출하고, 평의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1 조 : 회장은 본회를 통솔하고 밖으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2 조 :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3 조 : 회장은 평의원중에서 각부의 부장을 임명한다.
- 제 14 조 :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본회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한다.
- 제 15 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및 평의원회

- 제 16 조 :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평의원회의 모든 의결 사항을 보고한다.
- 제 17 조 :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이를 소집하고, 본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평의원회 1/3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8 조 : 평의원회를 재적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석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 제 19 조 :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입회금 및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 제 20 조 : 본 회칙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제 21 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규칙에 준한다. 단, 본 회칙은 1988년 1월부터 발효한다.

제2차 개정 : 1992년 11월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본회는 대한감염학회라 부른다.
- 제 2 조 : 본회의 목적은 감염에 관련되는 학문의 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다.
- 제 3 조 :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 : 본회는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등의 개최 및 후원
  - 2) 학회지 및 기타 학회목적에 합당한 도서의 발간
  - 3) 연수교육에 관한 사업
  -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 회 원 : 감염학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한 사람으로 감염학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
  -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개인

제 6 조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에서 정한 입회원서 및 입회금과 첫년도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 3 장 조 직**

- 제 7 조 :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총무부, 학술부, 간행부, 연수교육부
- 제 8 조 : 각부의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부 : 서무, 회계, 기획, 지부설치, 연락 및 학술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무
  - 2) 학술부 : 학회, 집담회, 좌담회의 개최
  - 3) 간행부 : 화보 또는 기관지 발행
  - 4) 연수교육부 : 의료인의 연수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제 4 장 임 원**

- 제 9 조 :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평의원 20명 내외  
부장 각 1명, 감사 2명
- 제 10 조 : 회장 및 부회장은 전임기의 평의원회에서 임기 만료전에 선출하고, 평의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1 조 : 회장은 본회를 통솔하고 밖으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2 조 : 회장은 평의원중에서 각부의 부장을 임명한다.
- 제 13 조 : 회장은 평의원중에서 감사를 임명한다.
- 제 14 조 :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본회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한다.
- 제 15 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및 평의원회**

제 16 조 :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평의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보고한다.

- 제 17 조 :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이를 소집하고, 본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평의원회 1/3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8 조 : 평의원회를 재적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석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9 조 :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입회금 및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 제 20 조 : 본 회칙은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제 21 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규칙에 준한다. 단 본 회칙은 1993년 1월부터 발효한다.

**제3차 개정 : 1996년 1월**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본회는 대한감염학회라 부른다.
- 제 2 조 : 본회의 목적은 감염에 관련되는 학문의 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 3 조 :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조 :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및 후원
  - 2) 학회지 및 기타 학회목적에 합당한 도서의 발간
  - 3) 연수교육에 관한 사업
  -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 회 원 : 감염학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 2)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한 사람으로 감염학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
  -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개인
- 제 6 조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회에서 정한 입회원서 및 입회금과 첫년도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제 3 장 조 직**

- 제 7 조 본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총무부, 학술부, 간행부, 연수교육부, 기획부
- 제 8 조 각부의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무부 : 서무, 회계, 기획, 지부설치, 연락 및 학술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무
  - 2) 학술부 : 학회, 집담회, 좌담회의 개최
  - 3) 간행부 : 회보 또는 기관지 발행
  - 4) 연수교육부 : 의료인의 연수 및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 5) 기획부 : 기획, 지부설치, 국제교류 및 특별사업
  - 6) 재무부

**제 4 장 임 원**

- 제 9 조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평의원 20명 내외  
부장 각 1명, 감사 2명
- 제 10 조 회장 및 부회장은 전임기의 평의원에서 임기 만료 전에 선출하고, 평의원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1 조 회장은 본회를 통솔하고 밖으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 12 조 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부의 부장을 임명 한다.
- 제 13 조 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감사를 임명한다.
- 제 14 조 평의원은 평의원을 구성하며, 본회운영에 참여하고 의결한다.
- 제 15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중임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및 평의원회**

- 제 16 조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평의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보고한다.
- 제 17 조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한다.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이를 소집하고, 본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시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평의원회 1/3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8 조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석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 제 19 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입회금 및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 제 20 조 본 회칙은 평의원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제 2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규칙에 준한다. 단, 본 회칙은 1996년 1월부터 발효한다.

제4차 개정 : 2005년 11월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의는 대한감염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라 칭한다.
-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 3 조 (목적)  
본 회의는 감염에 관련되는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회 목적에 합당한 도서의 발간
  3. 학술 및 보건에 관한 연구
  4. 연수 교육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자격 및 구성)  
본 회의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 회 원 : 감염학을 연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감염학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또는 단체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
- 제 6 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7 조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에서 발행되는 회지 및 공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년 이상 회원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한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 제 8 조 (자격 상실)  
회원 중 탈퇴를 원하는 경우,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회원으

로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 3 장 조 직

#### 제 9 조 (부서)

본 회의 목적을 위해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 재무부, 간행부, 연수교육부, 홍보부, 보험부 등 8개의 부서를 둔다.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 10 조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2. 기획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업무
3. 학술부 :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행사에 관한 업무
4. 재무부 :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
5. 간행부 : 학회지 및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업무
6. 연수교육부 : 의료인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업무
7. 홍보부 :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8. 보험부 :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

### 제 4 장 임 원

#### 제 11 조 (임원)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장 1명
4. 부이사장 1명
5. 이사 10명 내외
6. 감사 2명

#### 제 12 조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2.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3.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 13 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 14 조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부서 별로 분담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 제 15 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 회장 중에서 평의원회의 추대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없다.

### 제 5 장 회 의

#### 제 16 조 (구분)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제 17 조 (총회)

1.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평의원 1/3 이상이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 18 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40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2. 평의원은 최근 3년 이상 본 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개최한다.
5.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6.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 2) 회원의 자격 변경 및 심사
  - 3) 회칙 개정안의 심사
  - 4) 결산 및 예산 심사
  - 5)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 1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각 부서의 업무를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무**

제 20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예산 및 결산)

1. 각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계년도는 정기 학술대회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2 조 (회칙 개정)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시행 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5 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차 개정 : 2006년 11월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는 대한감염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 회의는 감염에 관련되는 학문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학회 목적에 합당한 도서의 발간
3. 학술 및 보건에 관한 연구
4. 연수 교육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및 구성)

본 회의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 회원 : 감염학을 연구하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명예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감염학 또는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또는 단체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소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자

제 6 조 (의무)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에서 발행되는 회지 및 공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년 이상 회원으로서 성실히 의무를 다한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제 8 조 (자격 상실)

회원 중 탈퇴를 원하는 경우,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9 조 (부서)

본 회의 목적을 위해 총무부, 기획부, 학술부, 재무부, 간행부, 연수교육부, 홍보부, 보험부, 법제부 등 9개의 부서를 둔다.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 10 조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
2. 기획부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업무
3. 학술부 : 학술대회 및 학술 관련 행사에 관한 업무
4. 재무부 : 본 회의 재정 및 회계 등에 관한 업무
5. 간행부 : 학회지 및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업무
6. 연수교육부 : 의료인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업무
7. 홍보부 :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8. 보험부 : 의료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
9. 법제부 :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업무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장 1명
4. 부이사장 1명
5. 이사 10명 내외
6. 감사 2명

제 12 조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2.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으로 한다.
3.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선출)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최근 3년 이상 본 회의 정회원인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
4.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본 회의 회무를 부서 별로 분담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무를 감사한다.

제 15 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본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 회장 중에서 평의원회의 추대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없다.

**제 5 장 회 의**

제 16 조 (구분)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

1. 정기 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평의원 1/3 이상이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평의원회)

1. 평의원회는 40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2. 평의원은 최근 3년 이상 본 회의 정회원인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정기 평의원회는 년 1회 개최한다.
5. 임시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회

장이 소집할 수 있다.

6.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 2) 회원의 자격 변경 및 심사
- 3) 회칙 개정안의 심사
- 4) 결산 및 예산 심사
- 5)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9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각 부서의 업무를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무임소 이사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무**

제 20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예산 및 결산)

1. 각 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은 감사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계년도는 정기 학술대회 후 익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2 조 (회칙 개정)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시행 세칙)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5 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